

#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기 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15
----------	---------

발의연월일: 2020년 2월 일

발 의 자: 경기문, 황영호, 김동협, 정정희

김선경, 김현희, 이종숙, 김용원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주거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함.

## 3. 주요내용

- 가. 표기 수정 및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항 삭제함.(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 나. 폐기물처리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 방법 및 예외규정, 계약기간 및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3항~제5항)
- 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의한 원가계산용역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2)
- 라.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계약 수정 사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3)
- 마. 종량제 봉투 금액의 점진적 현실화와 금액의 징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1조의2)

바. 부칙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나. 협조부서: 자원순환과

다. 입법예고: 2020. 2. 11. ~ 2. 15.

결 과: 자원순환과-4456(2020.2.14.) 의견제출 (붙임 참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허가취소,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3. 대행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④ 폐기물처리업자와의 계약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

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평가조례”라 한다)에 따른 평가 시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 단서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연장할 경우 평가결과 및 계약 상세 사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와 제8조의3,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원가계산용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의한 원가계산용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가계산용역 시행을 위한 기관 선정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의3(재정 지원 및 계약 내용의 변경)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저하가 우려될 경우 평가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 혹은 폐기물처리업자 양측의 합의에 의해 계약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구의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내의 인구가 현저히 증감하는 등의 청소구역 재조정 원인이 발생한 경우
3. 수집·운반 단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계약이 필요한 경우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대금 징수) ① 구청장은 제작원가 상승 등 종량제 봉투 금액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상할 수 있다. 다만, 인상폭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 범위 안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지정한 자를 통하여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징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의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를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와 재정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지급 등에”로 개정한다.
2. 제11조의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을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로 개정한다.
3. 제12조제5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u>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u>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
제4조(강서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강서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 ② (생 략)  <신 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허가취소, 관련 법규 위반 등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3. 대행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 설>

④ 폐기물처리업자와의 계약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평가조례”라 한다)에 따른 평가 시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신 설>

⑤ 구청장은 제4항 단서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연장 할 경우 평가결과 및 계

<신 설>

약 상세 사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원가계산용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의한 원가계산용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가계산용역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가계산용역 시행을 위한 기관 선정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 설>

제8조의3(재정 지원 및 계약 내용의 변경) ①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저하가 우려될 경우 평가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 혹은 폐기물처리업자 양측의 합의에



의해 계약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구의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내의 인구가 현저히 증감하는 등의 청소구역 재조정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3. 수집·운반 단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계약이 필요한 경우

<신 설>

제21조의2(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대금 징수) ① 구청장은 제작원가 상승 등 종량제 봉투 금액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인상할 수 있다. 다만, 인상폭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 범위 안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지정한 자를 통하여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 징수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